



5 New Jersey Law Against Discrimination (뉴저지주 차별금지법)에 관해 알아야 할 다섯 가지

- 1 New Jersey Law Against Discrimination(LAD, 뉴저지주 차별금지법)**은 실제 또는 간주된 인종, 종교, 출신국, 젠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또는 표현, 장애, 기타 보호받는 특성에 기반한 괴롭힘 및 차별을 금지합니다. 본 차별금지법은 고용, 주거, 공공시설(일반적으로 사업체, 식당, 학교, 여름 캠프,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등 대중에게 개방된 공간)에 적용됩니다.
- 2 본 차별금지 조항은 즉 고용주가 직원의 인종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채용 또는 승진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주거 제공자는 커플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아파트 임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에서 누군가의 종교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3 LAD는 편견에 따른 괴롭힘 역시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편견에 따른 괴롭힘을 받고 있다면, 고용주, 주거 제공자, 또는 공공시설이 이를 인식했거나 인식했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이러한 괴롭힘을 멈춰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대주 또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뿐 아니라 동료 간, 세입자 간, 고객 간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LAD는 권위 있는 사람이 고용 유지 또는 승진 등 유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대신 성관계 또는 성 상납을 요구하는 "quid pro quo(대가성)" 성적 괴롭힘 역시 금지합니다.
- 4 LAD는 본 차별금지법에 따른 권리 행사 또는 행사를 시도하거나, 차별 또는 편견에 따른 괴롭힘에 관해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 대한 보복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인사부에 성적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거 제공자는 DCR에 주거 차별을 신고한 사람을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 5 New Jersey Division on Civil Rights(DCR, 뉴저지주 시민권부서)**는 LAD를 집행하며 뉴저지주의 차별 및 편견에 따른 괴롭힘을 예방하고 제거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LAD에 따른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D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려면, NJCivilRights.gov 에 방문하시거나 973-648-2700 으로 전화하십시오.

